

5. IRP 가입 사후확인콜(해피콜) 수신 방식 선택

- 전화(휴대폰) 해피콜 온라인(모바일 웹) 해피콜 신청(만65세 미만의 경우만 가능)
 ※ 일정횟수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 손님이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실시됩니다.

6. 환매수수료 부과 확인(환매수수료 있는 투자상품 매수 시 또는 환매 불가 상품 매수 시 기재)

<input type="checkbox"/> 환매수수료 발생시	[상품명 자필 기재] 상품 환매시 환매수수료 ()%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환매 불가능한 경우	[상품명 자필 기재] 상품 환매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7. 대체상품매수 동의 및 통지서비스에 대한 고객 확인(최초 운용지시의 경우, 기존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작성)

대체상품 매수 동의여부	원리금 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상품제공한도 초과, 자사 정기예금 상품 운용 불가 등)에는 하나은행이 정한 타행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자동 (재)예치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대기자금으로 운용됩니다. [대체상품 매수 동의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만기안내 통지방법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전월 발송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세지(SNS) <input type="checkbox"/> 수신거부]				
운용수익 통지	월말 펀드 수익률 통지 [통지신청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안함] [통지방법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SNS 또는 문자메세지] 월말 적립금 운용안내 [통지신청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SNS 또는 문자메세지) <input type="checkbox"/> 신청안함]				
서비스통지 제외요청	다음 통지에 대하여 수령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신청”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발송제외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안함] <table border="1"> <tr> <td>통지내용</td> <td>매수예정상품등록/변경 안내, 보유상품등록/변경 안내, 부담금 입금 안내, 연금수령관련 안내 등</td> </tr> <tr> <td>통지매체</td> <td>이메일, 문자메세지(SNS) 등</td> </tr> </table>	통지내용	매수예정상품등록/변경 안내, 보유상품등록/변경 안내, 부담금 입금 안내, 연금수령관련 안내 등	통지매체	이메일, 문자메세지(SNS) 등
통지내용	매수예정상품등록/변경 안내, 보유상품등록/변경 안내, 부담금 입금 안내, 연금수령관련 안내 등				
통지매체	이메일, 문자메세지(SNS) 등				
법적통지 안내	법적통지(가입자 교육자료 발송(최초 1회 우편통지 필수), 약관 변경 안내, 법령에 의한 상품매매 불능 또는 위험자산 한도초과, DC/기업형IRP 기업부담금 미납 통지, DB 재정검증 관련 안내 등)는 수령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발송됩니다.				

8. 고객 유의사항

- 상품매매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
 - 상품의 매매신청시 거래일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어 매매됩니다(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다음 영업일에 고시된 금리 적용)
 - 상품에 따라 매매에 소요되는 영업일이 상이하므로 매매안료일을 고려하여 상품 매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예금 : 다음 영업일,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 개별 상품 투자설명서 매입/매도기준일 +1영업일)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이율보존형 보험)의 경우 만기일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시 상품운용방법 확인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만기예정일의 2영업일 전까지 손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운용됩니다.
 - 1)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 만기일(또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영업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며,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2)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 정한 금융기관간 상품 교환 한도초과, 자사상품 운용불가 등)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대기자금으로 운용됩니다.
 - 3) 저축은행 정기예금 만기도래 시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하되, 재예치된 금액과 다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금리가 낮은 대기자금으로 운용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의 예금자 보호 확인
 - 퇴직연금(DC,IRP)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정기예금, 이율보존형 보험)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DC,IRP)에 가입한 경우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이며, 다른 금융기관 및 복수로 퇴직연금(DC,IRP)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등)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수익증권 매매시 개별 투자설명서상 기준가 적용일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기준가 적용일자는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어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외의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수료 납입 안내 :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상 명시된 수수료율 참조)에 의거 매년 계약유당일(최초 부담금 입금일자) 기준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 근로자(가입자) 개인부담금 입금 시 유의사항 확인 : 다른 은행에서 이체하여 입금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점을 통하여 입금예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 구축행위 제한(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개인) 퇴직연금 신규(계약이전 포함)후 1개월이내 여신실행(신규, 대환, 재약정)이 제한되며, 여신실행 1개월이내 퇴직연금 가입이 제한 됩니다.
-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하나은행의 개인형IRP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가입자 자필기재 :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가입자 자필기재 : 수령]하였기에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개인형IRP 가입을 요청합니다.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